

YEAR END SUPPLIER COMMUNICATION

(이어엔드 서플라이어 커뮤니케이션)

Exxon Mobil Corporation¹은 정기적으로 자체의 업무 관행 및 그 자회사들의 업무 관행을 심층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 과정의 일환으로서, 저희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들(suppliers)에게 ExxonMobil과의 업무 또는 ExxonMobil을 대리하는 업무에 있어 ExxonMobil이 기대하는 바의 적절한 업무 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켜져 오고 있는 저희의 윤리정책(Ethics Policy) [또는 업무 행위의 기준\(Standards of Business Conduct\)](#) 과 같은 다른 정책들에서 표방하고 있듯이, 저희의 주된 목표는 저희의 영업활동을 저희의 최상의 기준에 따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공급자들도 저희와 유사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xonMobil의 기준은 안전, 계약 체결, 개인적 업무행동, 관련 법규와 적절한 내부통제의 준수 그리고 모든 거래의 적절한 기록 및 보고 등을 포괄합니다.

[ExxonMobil 공급자 요청 사항 \(ExxonMobil Supplier Expectations\)](#)에 명시되어 있듯이, ExxonMobil과 그 공급자들이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회계거래의 정산업무, 보고업무 및 청구 등의 업무는 양 당사자 사이의 영업적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근원적인 요청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는 미국 또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적용되는 부패방지법을 또는 반독점 및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xonMobil의 어떠한 개인도 귀하의 조직에 저희를 대신하여 부패방지법을 또는 반독점 및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률 또는 ExxonMobil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xonMobil의 어떠한 직원 또는 공급자도 정부기관이나 상업적 법인체의 피용인, 공무원, 대리

¹ Corporate Separateness Notice

Exxon Mobil Corporation에는 많은 자회사가 있으며, 대부분 ExxonMobil, Exxon, Esso 또는 Mobil 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의상 단순히 “ExxonMobil”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Exxon Mobil Corporation의 회사집단 또는 특정 자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택된 단어는 편의성과 단순성에 기초한 것이며 보고체계의 관련성, 법인격, 법인격 사이에서의 관련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어떠한 자료도 해당 국가의 법인체의 회사별 분리성에 우선할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업무관련성은 반드시 보고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기능적 지도, 관리(stewardship) 또는 서비스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 및 중개기관, 또는 ExxonMobil을 위한 행위의 수행 또는 그 영업행위의 수행을 담당한 개인에게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한 금전의 지급을 포함하여 여하한 부적절한 금전의 지급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선물과 여흥의 제공과 수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ExxonMobil과 상대방으로서 영업을 수행하거나 ExxonMobil을 대신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엄격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여흥과 관련된 규정들은 부적절한 이득을 만들어 낼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가치를 넘어선 선물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호화스럽거나 빈번한 여흥을 대접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3자에게 어떠한 선물도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로 귀하 역시 ExxonMobil을 대신하여 영업행위를 할 때,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는 적절한 선물이나 여흥만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귀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고, 상업적 거래 또는 정부기관의 공무원들과의 거래와 관련된 귀하의 업무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관련 부패방지법률 또는 ExxonMobil의 요청사항들을 충분히 준수할 있도록 담보하는 정책과 절차 그리고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xonMobil은 그 종업원, 수급인들의 종업원 및 ExxonMobil의 건물, 부지 또는 시설 등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전, 건강 및 생산적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헌신하여 왔습니다. ExxonMobil은 귀하가 합의서에 규정된 요건들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음주와 약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이를 실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급인 프로그램(Contractor's program)에서 허용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1) 수급인 소속의 피용인(Contractor Personnel)이 회사의 부지(Company Premises)에서 금지물질(Prohibited Substance)의 사용, 보유, 판매, 제조, 분배, 은폐 및 배송하는 행위의 금지(비번인 시간을 포함). 여기에서 금지물질에는 주류,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되거나 처방이나 복약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약물(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물 또는 생약제재 등)
- 2) (1) 실험용, 포장용, 저장용, 주입용, 섭취용, 흡입용 기타 금지물질을 인체에 침투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고안된 약물 또는 주류 관련 용품의 금지, (2) 음주나 약물검사 시료를 희석시키거나 이를 대체하거나 다른 것과 섞거나 기타 음주 또는 약물검사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고안된 용품이나 물질의 금지
- 3) 수급인 프로그램 또는 음주 또는 약물관련 부속약관에서 규정된 요건들의 제반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수급인 소속의 피용인의 회사 업무(Company Work)에서의 배제

4) 음주 및 약물과 관련된 제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

ExxonMobil과 귀하와의 음주 및 약물 관련 부속약관(Alcohol and Drug Exhibit)에 특정된 (특정된 경우) 음주 및 약물검사 패널(panel)과 관련하여 (screening 및 cutoff level의 확인을 포함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A) 음주 및 약물 관련 부속약관이 미국 교통부(US DOT)의 기준의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음주 및 약물 테스트를 요구하도록 체결된 계약의 경우, 귀하는 1) US DOT drug panel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panel을 사용하거나, 2) US DOT panel의 기준을 초과하는 panel을 사용하거나 또는 3) ExxonMobil drug panel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위 3가지 panel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먼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B) 음주 및 약물 관련 부속약관이 ExxonMobil panel의 기준의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음주 및 약물 테스트를 요구하도록 체결된 계약의 경우, 귀하는 1) ExxonMobil panel을 사용하거나, 2) ExxonMobil panel의 기준을 초과하는 panel (screening 및 cutoff level의 확인을 포함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위 2가지 panel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먼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정보는 현재 체결된 계약상의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 이외의 부가적인 계약상의 의무를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문자로 표시된 용어의 의미는 음주 및 약물 관련 부속 약관에서 정의된 의미 그대로입니다.

귀하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조직된 회사 등인 경우,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imperative)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전세계 ExxonMobil 자회사에게 상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미국 국민이 거래할 수 없는 법인체, 조직, 개인 또는 선박등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ExxonMobil에게 미국 국민이 거래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포괄적인 제재대상 국가에서 제조되었거나 추출된(extracted) 상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미국의 포괄적인 제재 대상 국가들 및 영역은 크림 반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입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 재무성의 특별제재대상국(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SDN")의 외국재산통제목록(Foreign Assets Control's List)에 등재된 개인이나 법인체 또는 선박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또는 수개의 SDN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독자적 또는 합쳐서 50 %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나 선박이 포함되며 또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제한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관련 적용되는 제재항목과 수출통제규정 및 EU와 다른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재항목과 수출통제규정을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계 ExxonMobil 자회사에게 상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귀하가 여하한 제재대상

국가 등과 거래하지 않을 것과 미국 국민이 거래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ExxonMobil에게 제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인체, 조직, 개인 또는 선박이 제재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xonMobil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 검증하는 정교한 사이버공격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ExxonMobil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ExxonMobil은 귀하가 정보보호(전자정보 및 출력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새롭게 검증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귀하가 통제가능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귀하는 전문적인 지도와 최선의 실례에 기초하여 적절한 데이터 보호장치와 사이버보안 장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ExxonMobil과 관련된 유해한 정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러한 상황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ExxonMobil이라고 칭하는 이메일이 실제로 저희 회사로부터 발송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귀하는 ExxonMobil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정기적으로 귀하의 소속 직원들에게 사이버보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피싱(phishing)” 공격이나 그 밖에 첨부물을 포함한 이메일 또는 잠재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위협하는 링크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이버보안 공격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는 교육이 포함됩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점점 더 데이터 보호관련 법률 또는 사생활 관련 데이터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수집과 가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정보가 수집되고 보관되는 방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사용목적에 대하여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전송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되는 방식에 대한 특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xonMobil은 그 직원, 수급인, 대리점, 고객 및 그 밖의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하가 아직 이러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ExxonMobil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모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만들 것과 귀하가 관련 데이터 보호관련 법률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는 통제장치와 통제 도구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귀하가 불법적인 정보 브로커링(Illegal Information Brokering)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 브로커링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절차를

타락시켜 사업을 따 내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비밀정보를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이므로 저희는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ExxonMobil의 프로젝트와 현장에서 귀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하수급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계관련 데이터들은 완결된 형태로 정확히 기록될 것과 ExxonMobil에게 청구되는 모든 청구서들은 가격과 지급조건 기타 ExxonMobil과의 계약에서 명시된 규정을 정확히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저희는 계약과 기타의 보상이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를 알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관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규준에 대한 최선의 지식과 이해를 위하여, 저희는 귀하가 본 커뮤니케이션을 저희 또는 저희 자회사와 업무 연락을 가지고 있는 귀하 조직 내부의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규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기타 관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²을 위한 Controls Adviso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gion — Country	Controls advisor	Email address	Telephone #
USA	Kimberly A Walker	kimberly.a.walker@exxonmobil.com	+18326257574
Canada	Andy Wong	andy.pe.wong@esso.ca	+15872263181
Argentina	Fernanda Castellini	fernanda.castellini@exxonmobil.com	+5491130696485
Brazil	Carlos Madureira	carlos.madureira@exxonmobil.com	+258840937125
Guyana	Juanita Mangal	juanita.mangal@exxonmobil.com	+5922275644
Europe - All	Adham Abaza	adham.abaza@exxonmobil.com	+420221459499
Nigeria	Aminat O Raji-Salami	aminat.o.raji-salami@exxonmobil.com	+2349087621290
Angola	Leila M Ribeiro	leilla.m.ribeiro@exxonmobil.com	+244222679000
Chad and EG	Karel Bouma	karel.bouma@exxonmobil.com	+420296577127
Iraq and Dubai	Alice Kotkova	alice.kotkova@exxonmobil.com	+420730527591
Malaysia	Nurul Hana Abdul Rahman	nurulhana.abdulrahman@exxonmobil.com	+60348152280
Australia/PNG	Panunee Piriya Wong	panunee.piriya.wong@exxonmobil.com	+6624078961
Indonesia	Dimas Kusumohapsor	dimas.i.kusumohapsoro@exxonmobil.com	+62215740707;ext=12279
Sakhalin	Kirill Prokudin	kirill.v.prokudin@exxonmobil.com	+74242677422
India	Apoorva Pradeep	apoorva.pradeep@exxonmobil.com	+918071085457
AP - Rest of AP	Ruthairat Hannarutanan	ruthairat.hannarutanan@exxonmobil.com	+6624078897

² 다른 방법으로, 귀하는 ExxonMobil Corporate “hot line” 1.800.963.9966 (미국내) 또는 001.972.444.1990(미국 이외 지역 collect call)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